

[판결비평] 2007-6

광장에 나온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돈과 사법정의를 맞바꾼 판결을 거부한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2007.9.6. 선고, 2007노5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판사 이재홍(재판장), 이상원, 호제훈

사법 분야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의 판결 중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판결 또는 그에 반대하여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고르고, 이 판결에 대한 비평칼럼을 수록한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의 2007년 여섯 번째 비평대상으로, 수 백억원 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준법경영을 주제로 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강연과 언론기고를 지시하고 검찰 수사도중에 밝힌 개인 재산을 사회에 기부키로 한 '사회공헌약속'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하여 징역3년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와 이상원, 호제훈 판사는 약 1,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700억 원을 사용한 횡령혐의,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에 다른 계열사가 지원하게끔 해 약 1,600억 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현대그룹의 각 계열사에 수 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대표이사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징역3년형이 선고되어 2심에 가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천 억대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횡령과 배임죄를 저지른 기업인에게 또 다시 ‘숨방망이 처벌’이 선고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사법부가 경제정의는 물론이거니와 사법정의를 내버렸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재판장을 맡았던 이재홍 수석부장판사가 정몽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경영일선에서 잠시라도 물러나게 되면, 현대차그룹이 부도될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것은 국가경제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국민적 비판을 달게 받게 되고 판결결과를 설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재판부가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대상 강연 실시(2시간 이상),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신문기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을 제시했고 이를 실형을 대체할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포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봉사명령 내용이 과연 실형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봉사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사법정의를 도 부합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기업활동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한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걸림돌만 되었다고 본다. 이에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기 위해 판결비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평칼럼은 정남구 논설위원(한겨레),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이 각각 작성하였다(편집자 주).

“일도, 이부, 삼백, 사천”

정남구 논설위원(한겨레)

우리 병역법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의료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경계근무를 서는 것보다 공중을 위해 의사 일을 하면, 국가와 사회에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다. 국민개병제의 큰 줄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살리는 게 옳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원리를 어디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을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가 된, 많은 돈을 버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자. 그가 “현역 입영 대신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버는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리는 병역의무자들에게 현역입영 대신, 국가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그들이 아주 잘 할 수 있는 다른 일거리

를 여러가지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돈은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조달 가능한 것이므로, 병역을 대체하게 할 수단이 못된다.

둘째, 돈으로 병역을 면하는 길을 열어주면, 자신이 아닌 부모의 돈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사는 사람도 나타날 것이므로 또한 허용할 수 없다.

일정액의 ‘병역면제세’를 내는 모든 사람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고, 대신 병역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보수를 주는 제도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도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병역면제세’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된다. 하지만, 이런 제도 없이, 병역의무자가 개별적으로 국가와 돈으로 협상을 벌여 병역면제를 받는 것이라면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이 고민할 일이 아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 백 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법정 최저형(5년)보다 크게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유예의 길을 터준 것도 물론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나, 항소심 재판부가 사회봉사 명령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처벌의 효율성’ 논리를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여, 헌법이 규정한 ‘법 앞의 평등(헌법 제 11조)’을 무력화시킨 까닭이다.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들어가며 깊이 숙고했다고 한다. 법원이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에 요약돼 있다.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의 최고이사결정자이고, 그의 부재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경영자로서 정 회장을 대체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증거를 법원은 갖고 있는가? 그가 실형을 살 경우 나라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논리는 비약이 심해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증거’를 중시하는 법원이, 법관 한 사람의 막연한 감에 의존해 판결을 한 것인가? 만에 하나 나라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그것은 법원이 고민할 일이 아니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은 뛰쳐나온 보릿자루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 판사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널리 감염돼 있던 ‘나라경제여려증’이 도져나온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법원이 진실로 나라 경제를 걱정했다면, 전근대적인 기업경영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걸었어야 마땅하다. 앞으로 이뤄질 많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내가 실형을 살면 나라 경제가 위태로와질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나도 사회공헌하겠다고 나서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내린 사회봉사명령은 온당한가? 사회봉사명령 가운데 핵심은 “사회 공헌 약속대로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시민이 우선 사용하게 하며, 7년 동안 매년 1200억원을 내라”고 한 부분이다. 한마디로, 사회공헌 기금으로 8400억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자유형을 대신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더 처벌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유형이나, 재산형이나는 법원이 처벌의 효과를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택 가능하게 할 것은 결코 아니다. 법원은 정 회장 판결과 관련해 “돈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고 했지만, 사회공헌 약속은 정 회장에게서 나온 것이지, 법원이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부자 피고인들이 ‘사회

공헌 기금’으로 자유형을 대신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받아들일 것인가?

자유형이나 재산형이나는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할 일인데,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제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피고인과 협상을 벌여 ‘형’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행위다.

정 회장이 내기로 한 돈은 국가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벌금의 성격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 회장 부자는 계열사 글로벌비스에 물류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몇 년만에 1조원 안팎의 이익을 챙겼다. 정 회장이 애초 글로벌비스 주식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겠다고 한 이유다. 이 돈은 현대차와 계열사 주주들의 몫이나,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어려워 사회에 내겠다고 한 것일 뿐이다. 정 회장이 애초 했던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않든, 그 돈은 법원이 들먹여서는 안 될, 남의 떡이었다. 법원은 이 돈을 내는 것을 사회봉사 명령의 내용에 포함시켜, 남의 떡으로 생색을 낸 것 뿐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 아니다. 우리 법원이 재벌이라는 경제권력 앞에 아직도 납작 엎드려 있음을 또 한번 드러낸 판결일 뿐이다. 재벌총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어떤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실형만은 면해줄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린 것이다. ‘일도·이부·삼백’이란 말이 있다. 수사기관에 불려갈 일이 생기면 우선 도망치고, 어쩔 수 없이 불려가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그래도 안되면 권력 배경을 동원하라는, 사법제도에 대한 비아냥을 담은 말이다. 이제 그 뒤에 ‘사쩨’를 덧붙여야 할 듯하다.

“권력 배경을 동원해서도 안되면 돈(쩨)을 내면 풀려난다.” 이번 판결을 ‘사쩨 판결’이라고 부르고 싶다. □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가?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패턴이 바뀌었다. 쫓긋 세우고 부릅뜬 이목(耳目)이 있으니 더 이상 유전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유죄는 유죄로 되 유전이면 자유이고 무전이면 교도소 수감이다. 외신의 비아냥거림처럼 피고인 쪽에서 보면 ‘돈으로 산 자유’다. 그 보도가 ‘돈에 팔린 사법정의’로 읽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법률의 해석적용의 결과인 판결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의 판단대상이다. 대다수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결정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고 논증이 있어야 한다.

정몽구회장 항소심판결은 설득력이 있는가. 재판부의 판단에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었는가. 기업총수를 교도소로 보내면 그 기업이 망하고 한국경제가 흔들릴 것이라는 예측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접촉했다는 몇몇 시민의 순진한 생각인가.

일반서민들은 당장 먹고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기업총수가 없으면 기업 망하고 결국 경제 나빠지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막연한 도식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사법부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논리로 경제단체가 사법부를 협박하면 사법부는 기업인들에게 숨방망이 처벌의 혜택을 부여해왔기 때문에 생긴 도식은 아닌가.

허용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부가한 사회봉사명령의 내용은 어떠한가. 과연 재산의 사회 환원이나 준법경영에 관한 강연 또는 언론기고가 형법 제62조의2에서 의미하는 사회봉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조문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보호관찰이나 수감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도록 법원이 강제하는 것이다.

봉사의 사전적 낱말풀이나 일상 언어용법에 따른 의미를 보자. 국어사전에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는 자연보호,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 공공시설 봉사,

대민 지원,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등을 사회봉사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봉사란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이다. 자기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법원이 형의 집행을 대신하여 억지로 시키는 것이다.

정몽구회장이 받은 사회봉사명령 중 사회환원하라는 8400억 원은 불로소득이거나 불법소득이나 마찬가지다. 당연히 사회에 환원해도 아까움이 없는 돈이다. 의당 과징금 등으로 추정되어야 할 재산이다. 준법경영에 관한 1회성 강연이나 언론기고 또한 봉사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몽구회장이 받은 사회봉사명령은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이탈한 해석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일상 언어적 의미의 봉사와도 거리가 멀다. 어떤 해석방법에 의하든 죄형법정주의의 핵심내용인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허용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금지된 유추다.

법원이 제시한 유리한 양형사유와 형의 집행유예도 문제다. 재벌총수는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아닌지,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재판부가 경제논리로 실형선고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은 아예 언급도 없다. 그랬다면 더욱 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기업경영인이라는 직업이나 사회적 환경은 오히려 강한 책임의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경적 양형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형량(刑量)을 줄여준 이유와 그 형(刑)의 집행을 미루는 이유는 엄연히 다른 것

판결문을 읽어보면 양형상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에 대한 언급은 있다. 그런데 형의 양을 정한 사유와 집행유예를 가능하게 한 사유에 대한 구분이 없다.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집행유예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형량을 낮추는데 끌어들었던 사유로만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형집행의 필요성이 없고 특별 예방적 관점에서 형벌완화가 요구되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선고형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요한 사정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고령이나 건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인정하여 감경사유로 고려했지만, 이는 오히려 집행유예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읽어 보면 감경적 양형사유인지, 아니면 집행유예사유인지 분간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학력, 건강상태, 전과관계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지만,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언급함이 없이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면서 넘어간다.

피해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등 자발성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감형이나 집행유예사유가 되기도 한다. 기업범죄의 경우 기업총수들은 초범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그런 사유를 일률적으로 감형이나 집행유예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마지못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척하는 기업인은 집행유예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범죄자는 형벌감수성이 높으니 단기라도 자유박탈과 제한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 그들은 교도소 내에서 범죄를 학습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단기자유형의 폐해도 없을 것이므로 단기자유형에 적합하다.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도 실형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법이 살아있음을 기업인에게 보여주어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인 지배를 만천하에 인정해 준 꼴

어느 사회든 법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존립은 위태로워진다.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그리고 처벌도 좋지만 국가경제를 살리고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은 근시안적 임시방편일 뿐이다. 재판부가 끌어들인 어설픈 경제논리로 현대기아차의 1인 지배를 만천하에 인정해 준 꼴이다. 그 사람이 수감되어 경영에서 물러나면 기업이 쓰러지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으니 말이다.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과감하게 단기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하여 형벌의 적극적 일반예방의 효과를 피해야 한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린다. 집행유예제도도 일부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

법이 없는 사회를 창조한 법원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법원이 미쳤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모두 그렇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에다가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까지 완전히 작심을 하고 내달리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고, 탈선한 폭주 기관차가 오히려 점잖아 보일 뿐이다. 폭주 기관차에 기관사는 보이지 않는다. 기관사가 있고서야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라는 대법원장의 말이 이처럼 휴지로 구겨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린 어떤 판사는 모든 비판을 달게 받겠노라고 호언했다. 그러나 어찌 일개 판사 한 명이 법원 전체에 쏟아지는 비난과 불신을 달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판결이 법원 전체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그의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알고서도 그러한 판결을 내렸다면 그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법적 판단은 판사 또는 집합적 의미로서의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 판사는 재판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해 ‘자기 맘대로’ 판단한다. 그것이 유무죄의 판정이건 양형이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건 자기 맘대로 한다. 사회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권한 뒤에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제약이 있다. ‘법과 양심’의 제약은 일차적인 제약이다. 그러나 ‘법과 양심’이 의미하는 진정한 제약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모든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권한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따른다는 말을 학창 시절 내내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살면서 언젠가부터 이런 법언은 ‘고상한 지적 마스터베이션’으로 치부해 버리게 되었다. 권한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하려고 하기도, 권한 있는 사람에게 거부하는 것이 더 우월한 생존전략임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 권리와 의무가 동행하는 것은 적어도 필자가 체험한 ‘삶의 현장’에는 없었다.

물론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

이 반론할 지도 모른다. 정몽구 회장의 처벌과 관련하여 거액의 사회출연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김승연 회장의 건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 사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그러나 주주의 돈을 훔친 사람이 그 돈을 사회에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준다면 이 세상에 절도나 횡령으로 콩밥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 법원이 얼마나 많은 피의자에 대해 그들의 건강상태를 걱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던가. 정말 법원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한 일반 국민과 언론은 모두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이란 말인가.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법 앞의 평등’이다. 이번 판결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판사들이 반복적으로 재벌 회장을 일반 민초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대우했기 때문이다. 재벌 회장은 남의 돈을 훔쳐도 그만이고 다른 사람을 때려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에는 오직 경우에 따라 그 때 그 때 달리 적용되는 ‘무원칙한 강제’만이 존재할 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듯이 살아 있는 경제권력 역시 신성불가침이다.

후진국을 여행할 때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상당수 국가들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큰 기업을 몇 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 놀라곤 한다. 저런 체제에서 어떻게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생각은 지당하다. 사회체제가 공정하지 않을 때 획기적인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한 가지 팩트를 간혹 잊어 버리곤 한다. 우리나라가 그 후진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그리고 그것이 어찌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